

청약일정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접수시간	신청장소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2022.08.30.(화)~2022.08.31(수)	•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건본주택(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주택형별 대상 세대

	구분	84A	84B	84C	110A	110B	121P	146P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8	2	-	-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8	2	-	-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7	3	-	-	-	-	-
	중소기업 근로자	7	3	1	-	-	-	-
	장애인	7	3	2	-	-	-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내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우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특별공급 유형	추천기관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장애인	충북도청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 충북북부보훈지청 보상과
중소기업 근로자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우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안내문은 단순 참고용으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03.18>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입주기업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발급번호	발급일자
신청인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811111-1234567
	직위(직급) 부장 근무기간 10.11.11~현재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대우아파트 101동 101호 전화번호 010-1234-4567
	입주기업 근무부서(파견자 등은 원소속부서) 경리부 입주(예정) 사업장[√]
	확인사항 담당업무 경리업무 입주(예정) 종사자[√]
소속기관	기관명 기업명 상시 근로자 수(연구원 수) 62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101010-2020202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성본산업단지 OO블록

위 사람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7항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2022년 06월 12일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 인 해당업체 인감날인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색상이 어두운 칸을 작성합니다.
가. “발급번호”는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명-일련번호의 순으로 기재합니다.
나. 산업단지에 입주하였거나 입주예정인 사업장임을 확인하여 “입주(예정) 사업장[]”에 √표시를 합니다.
다. (해당 사업장이 산업단지에 이미 입주한 경우) 소속 종사자에 대해 “입주(예정) 종사자[]”에 √표시를 합니다.
라. (해당 사업장이 산업단지에 입주 예정인 경우) 입주예정인 사업장 내에도 담당업무상 입주하지 않는 종사자가 있거나, 입주하지 않는 사업장 내에도 담당업무상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종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 종사자인지 여부를 별도 확인하여 “입주(예정) 종사자[]”에 √표시를 합니다.
마. “입주(예정) 종사자[]”에 √표시가 된 종사자만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연구원 수)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주기업과 제2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만약 위 사항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 전체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03.18>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입주기업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발급번호	발급일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직급) 근무기간
	주소 전화번호
	입주기업 근무부서(파견자 등은 원소속부서) 입주(예정) 사업장[]
	확인사항 담당업무 입주(예정) 종사자[]
소속기관	기관명 상시 근로자 수(연구원 수)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위 사람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7항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 인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색상이 어두운 칸을 작성합니다.
가. “발급번호”는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명-일련번호의 순으로 기재합니다.
나. 산업단지에 입주하였거나 입주예정인 사업장임을 확인하여 “입주(예정) 사업장[]”에 √표시를 합니다.
다. (해당 사업장이 산업단지에 이미 입주한 경우) 소속 종사자에 대해 “입주(예정) 종사자[]”에 √표시를 합니다.
라. (해당 사업장이 산업단지에 입주 예정인 경우) 입주예정인 사업장 내에도 담당업무상 입주하지 않는 종사자가 있거나, 입주하지 않는 사업장 내에도 담당업무상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종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 종사자인지 여부를 별도 확인하여 “입주(예정) 종사자[]”에 √표시를 합니다.
마. “입주(예정) 종사자[]”에 √표시가 된 종사자만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연구원 수)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주기업과 제2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만약 위 사항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 전체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